

# 2002년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관련 동향 분석

2002. 5

서재진 (선임연구위원)  
김수암 (책임연구원)

통 일 연 구 원

- 목 차 -

I. 문제제기 .....	1
II.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 .....	3
III.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 .....	6
IV.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 .....	9
V. 행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 .....	12
1.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 .....	12
2. 미국 고위 관리의 북한인권문제 언급 .....	17
VI.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발언의 의미 .....	19
VII. 정책적 고려사항 .....	22

## I. 문제제기

- 냉전기 사회주의권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은 봉쇄정책과 함께 인권 문제를 매개로 한 개입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미국의 인권정책은 사회주의권 봉쇄에도 일조한 측면이 있음.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서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오랫동안의 협상끝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가 1975년의 헬싱키 협정인바, 이 협정에 인권관련 규정이 포함됨.
  - 제1부의 인권에 관한 조항은 서방이 소련과 동구 국가들에게 인권을 포함한 내정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전대미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제3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항은 사람, 문화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통한 파급효과가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을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음.
  
- 헬싱키협정의 사례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가 주요 접근수단임을 시사함.
  - 북한체제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지탱되고 있는 것은 억압적 사회통제와 인권유린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므로 북한사회의 변화유도를 위해서는 인권문제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임.
  
- 그 동안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북미간의 공식 협상 테이블에 언급하지는 않았음.
  -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및 미사일문제 때문에 북한내 인권상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였었음.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는 바, 이전의 클린턴 정부에 비하여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미국 국무성은 금년 3월의 각국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금년 4월에 개최된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 대표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였음.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서는 금년 4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는 4월 17일 북한인권상황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5월 2일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또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북한 인권문제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 인권문제 관련 동향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우리의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II. 미 국무성의 인권보고서

- 미 국무성의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국(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에서 1977년부터 각국 인권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간하여 오고 있는 바, 금년도에는 3월 4일에 발표하였음.
- 보고서의 앞 부분에서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체제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북한을 기본적으로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 하의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김일성을 유일한 주석으로 삼아 주석제를 폐지하는 대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가의 최고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 자력갱생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이고 사법부의 독립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
  - 조선인민군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일차적인 조직이지만 노농적위대를 포함하여 예비·유사군사조직이 있으며 보안요원들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
  - 국가가 모든 주요 경제활동을 지도하며 국가가 통제하는 노동조직만이 있을 뿐임.
  - 지속적인 자연재해로 영양실조와 기근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량원조를 요구하는 한편, 대용식품을 생산하고 있음.
-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6개 부문으로 대별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바, 향후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어떠한 항목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Section 1 개인의 존엄 존중: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생명의 박탈, 실종,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인 체포, 구금 혹은 추방, 공정한 공개재판의 부정, 사생활, 가정 혹은 통신에 대한 자의적 간섭
- Section 2 시민적 자유의 존중: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국내이동, 해외여행, 이민 및 환국의 자유
- Section 3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부를 교체할 권리
- Section 4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제·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북한당국의 태도
- Section 5 인종, 성, 종교, 장애, 언어, 사회적 지위에 기반한 차별: 여성, 아동, 장애인
- Section 6 노동권: 결사의 권리, 단체행동 및 교섭권,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관행과 최소고용 연령의 상태, 수용가능한 노동조건, 인신매매

○이러한 항목들에 입각하여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인권이 열악(poor)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향후 대북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기할 사안들을 전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요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 평화로운 정부의 교체의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함.

- 초법적 살해와 실종이 지속되고 있음.
-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정치범으로 수용되고 있음.
-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음.
- 국가는 인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지도부는 대부분의 국제인권규약, 특히 개인의 권리를 불법적이고 이질적이며 정부와 노동당의 목적을 전복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의 인권대화에 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음.
- 반혁명범죄와 같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범죄에 대해 사형과 재산몰수형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문화와 매체활동은 노동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 있음.
- 북한에서 판매되는 라디오는 북한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획득한 라디오도 유사한 방식으로 채널을 고정시켜야 함.
- CNN은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평양에서만 유용함. 이러한 조건 하에서 정부에 의해 승인을 받고 전파되는 것 이외에는 외부의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
- 북한당국은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음.
-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온 여성과 소녀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 Ⅲ.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인권문제 제기

-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의 지위에서 탈락하여 금년회의에는 옵서버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발언시간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인권침해국가들을 단순 나열하는 것으로 활동이 제한되었음.
- 미국은 4월 8일 의제9항을 다루는 회의에서 국별 인권침해 상황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는 바, 이라크, 쿠바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목하였음.
  - 북한이 혹독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였음.
- 특히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며 인권이 열악한 원인의 하나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들고 있음.
  - 향후 인권문제와 미사일·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연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발언시간이 짧은 대신에 유럽연합의 대북인권문제 제기는 매우 구체적이었음.
- 현재 스페인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EU)은 4월 8일 전

세계 인권침해 상황을 평가하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에 이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언급함.

-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상황을 평가함.
- 특히 북한내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침해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존중되지 않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북한측에 대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기함.

- 구체적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EU와의 인권대화에 북한이 건설적인 자세로 임할 것.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비롯한 국제인도지원기구들에 대한 접근 및 근무조건 개선을 확대할 것.
-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과 친지들의 교환방문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에 나설 것.
-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협약 등 국제협약 가입에 따른 협약내용의 완벽한 이행과 고문방지협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대하여 서명·비준할 것.
- 인권을 모니터하는 유엔 메카니즘과 협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의 대화에도 임할 것.

○향후 EU 차원에서의 조치방안을 언급함.

- “차기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관련 포럼(relevant forum)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북한 내 인권상황의 전개를 매우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주시해나갈 것”이라고 대북 인권상황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 검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위원회를 포함한 인권관련 국제기구에서 대북 비난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캐나다도 4월 8일 발언을 통해 2001년 8월 오타와에서 열린 양자대화 와 캐나다 관리의 평양 방문과정에서 인권에 관해 관심을 표명하였는 바, 향후 대북 접촉에서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힘.

#### IV.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

-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탈북자의 증언 등의 청취를 통하여 북한내의 인권실태와 해외체류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5월 2일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였음.
- 탈북자 이순옥, 이영국, 탈북자를 지원하는 독일출신 의사 노르베르트 폴로첸 등 8인의 증인으로부터 북한의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들은 뒤 앞으로 의회차원의 대안제시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대북식량 원조와 인권상황 개선을 연계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금년 여름 북한의 식량 재고 바닥으로 기아가 재연할 조짐이 있으므로 즉각 새로운 식량 원조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음.

##### <주요 증언 내용>

- 홍콩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제스퍼 베커 전 베이징(北京)지국장은 “대북 식량 원조를 협상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함.

○ ‘국경 없는 의사회’의 소피 델로니 북한 대표는 “식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소개함.

○탈북자 이영국씨는 식량 원조를 인권과 연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몽골과 러시아에 수용 인원 1만명 규모의 수용소를 세우는 한편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함.

○탈북자를 지원하는 독일 출신 의사 노르베르트 폴러첸 박사는 “북한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세계가 북한의 실정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제 사회가 언론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과 인권 개선이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함.

○탈북자인 이순옥(여) 씨는 북한에 살 때 신앙 문제로 받은 고문 때문에 치아 8개가 빠지고 왼쪽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증언했고

- 김성민 전 북한군 대위는 미국 의회가 탈북자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함.

○존 파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소장은 “지난 4년 동안 WFP와 북한당국 간에 신뢰가 쌓이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WFP 지역사무소가 평양 이외에 5곳에 설치됐고 WFP 요원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140여 군에서 163개 군으로 확대됐

다는 점을 예로 들었음.

- 파월 소장은 북한의 식량 재고가 7-8월이면 바닥나기 때문에 지원이 없다면 심각한 기아 사태가 발생한다고 경고함.

## V. 행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

### 1.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

#### <보고서의 내용>

-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서는 금년 4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부인하고 군사력과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면서도 굶주리게 만드는 ‘전체주의 정권’(totalitarian regime)으로 규정하고 있음.
  - 헌법 11조 노동당의 영도를 문제시
  - 집단적 가치가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에 선행하는 점
  - 강력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교양
  - 김일성·김정일의 숭배
  - 허가되지 않은 공적 회합의 금지
  - 정부에 의해 창립된 조직 이외의 조직이 없는 점
  - 인권이사회의 지적대로 인권조건을 모니터할 국내조직이 없는 점
  - 국내매체의 검열, 해외매체에 대한 접근 불허, 인터넷과 해외전화의 제한 등 정보의 전파 통제
  - 인권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외국정부 대표, 기자 등의 이동의 자유 불허

- 정부에 대한 비판의 불허: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등 교화소내의 인권유린

○북한에는 어떠한 종류의 개인적 자유와 인권의 보호가 없다고 평가함.

- 정부에서 허용되는 약간의 종교활동은 외국방문자를 위한 것으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인도적 재난에 빠져 있음.

- 경제정책의 실패와 계속된 자연재해로 지난 10년간 기아와 질병으로 백만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특히 아동을 포함하여 정신적·육체적 성장에 장애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

- 지도부가 통신매체와 정보의 유출입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에서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알려지고 있지 않음.

####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권고내용>

○북한내 인권침해에 대한 미국행정부의 발의, 탈북자문제, 미국과 북한정부간 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내 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세가지 범주에서 총 13개항의 권고사항을 제기함.

○기본방향으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검증가능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임.

-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만들어 나가고 외부세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외국인권모니터, 인도적 기구의 북한 모든 지역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개방’의 문제에 중점을 둬.

#### 북한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발의(initiative)

- ① 의회는 비정부기구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예산을 지급할 것
  -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를 포괄적인 형태로 응집할 필요성
  - 남한과 미국이 발간하는 연례인권보고서는 기본인권상황을 기술하는데 충분히 포괄적이지 못하거나 각 저자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
  - 국제인권표준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고 탈북자와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활용
- ② 국무성은 북한내 인권침해에 관한 정보와 보고를 획득할 능력을 확대할 것
  - 중국 국경쪽에서 활동하는 기구나 개인뿐 아니라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의 관리로부터 정보수집 노력
  - 수집·분석·검증된 정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
- ③ 대통령은 북한내 인도적 상황과 자유와 인권보호의 결핍을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언급할 것
- ④ 의회 안에 북한인권문제특별위원회(congressional caucus)를 설치할 것

- 북한 인권상황의 공청회의 개최
  - 북한내 인권을 증진할 미국의 정책대안을 점검
  - 북한에 관한 의회의 입법을 모니터하고 북한내 인권을 개선할 부가입법을 제안
  - 미국이 북한내 인권의 보호를 개선하는데 타국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탐구
  - 북한내 인권을 증진할 정책의 형성과 실행에서 국제종교자유 위원회와 작업
- ⑤ 의회는 북한내 인권보호를 옹호하는 조직과 북한내 인권상황에 대한 자각을 높이려는 활동에 대한 자금을 확대할 것: 미국정부는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NED)를 통해서 북한내 인권유린에 대한 문서화를 시도하는 남한내 NGOs에 자금을 제공하여 왔음.
- ⑥ 미국은 북한주민에 정보, 특히 종교자유와 기타 인권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할 것
- 미국의 소리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에 의한 북한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 북한주민과의 맨투맨 교환, 다른 형태의 접촉 채널
- ⑦ 미국은 북한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외교를 활용할 것
- 적절한 국제포럼에서 북한 내 인권침해를 제기
  - 유엔에서 종교적 자유와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후원
  - 북한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유엔특별조사관의 임명을 요구
  - 한국,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회담에서 종교자유와 인권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하도록 촉구
  - 유럽연합으로 하여금 북한정부와의 인권논의에 종교자유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도록 촉구

북한난민을 보호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것

- ⑧ 미국정부는 중국, 러시아, 다른 국제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북한인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할 것
- ⑨ 미국정부는 중국정부로 하여금 남한과 국제NGO가 중국북부지역에 더 많이 접근하고 북한난민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을 허용하도록 촉구할 것

공식접촉을 통한 인권개선

- ⑩ 미국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제공, 인권의 보호를 포함하는 의제를 내놓기 위해 북한과의 어떠한 접촉이라도 활용해야 함.
  - 인도적 지원의 배분이 모니터될 수 있도록 확보
- ⑪ 미국정부는 국제공동체와의 보조 하에 북한정부로 하여금 유엔 인권메카니즘에 의한 인권조건의 모니터를 허용하고 외교관, 독립기자 등의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도록 촉구할 것
- ⑫ 미국정부는 국제공동체와의 보조 하에 B규약에 따른 보고서의 검토결과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실행하도록 촉구할 것
- ⑬ 미국정부는 한국전쟁 당사자간 어떤 형태로 맺는 영구평화조약

이라도 종교의 자유와 종교소수자의 비차별 대우 조항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

## 2. 미국 고위 관리의 북한인권문제 언급

- 부시대통령의 대북관은 향후 미국의 인권문제 접근방향을 전망하는데 유용한 판단근거로 작용할 것인 바,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나라”로 규정하였음.
  - 2월 1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투명성이 부족한 데다 국민을 가두고 굶주리게 하며 동시에 무기 증강을 하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있으며, 자유롭게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대북인권관을 피력함.
  - 2월 20일 방한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투명하지 않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대북관을 피력함.
  -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하는 접근방식을 밝힘.
- 주한미국대사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2월 14일 한국 군사문제연구원이 발행하는 계간 『한국군사』지(誌) 최신희 특별기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 사항(humanitarian concerns)’들도 북한과의 회담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힘.
  - 3월 21일 미하와이대 동서문제연구소 한국동문회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주최한 ‘미국과 남북한 관계’라는 제하의 조찬

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등으로 피난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함.

- 2002년 4월 13일 제주평화포럼 오찬 연설에서 “미국은 인권 보고서에서 발표했듯이 북한에서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진실로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다(do not allow to ignore)”고 밝힌 바 있음.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002년 2월 5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의 국민억압과 집단수용소의 인권탄압 실태를 비판함.

○파월 국무장관은 2월 17일 NBC방송의 ‘언론과 만남’ 프로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비난과 주민들의 기아, 파괴된 경제 외에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못한 과거와 결별해 주민들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라”는 견해를 표명함.

○4월 17일 론 크레이너(Craner) 국무성 인권 차관보는 “미·북 대화에서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군사력 문제 등 이외에 인권도 의제로 삼을 것”이라며, 정치범 수용소 현황 등 북한 인권실태를 구체적으로 소개함.

-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론화할 때”라고 언급함.

## VI.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발언의 의미

-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행정부, 의회, 국가 산하 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겠다는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에 대하여 핵문제, 미사일 문제, 재래식무기 문제, 테러문제에 덧붙여 인권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는 5개의 바스켓으로 확대된 것임.
- 미국이 타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이념과 그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관행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금년 들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대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변화된 대외정책의 일환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당면한 반테러전쟁의 이념적 정당화의 측면에서 인권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 동안의 부시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소재로 활용한 측면이 있음.
  - 김정일에 대한 부정적 발언, 북한에 대한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정당성 제고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부시 미국대통령은 금년 한국 방문시 북한의 체제와 주민을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을 표출한 바 있는데 이는 인권의 개념에 근거한

- 미국의 대북정책의 방향을 예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만큼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도 지지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함.
  - 과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중국의 일당 체제에 관련된 것으로서 독재국가일수록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최근 미국의 학계와 정책서어클에서 ‘민주주의적 평화’에 관한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민주주의적 평화란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임.
    - 또한 WMD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독재국가들이며 인권이 무시되는 국가라는 시각에 근거함.
    - 북한의 경우에도 김정일의 독재정권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인권문제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부시 미대통령이 2월 20일 방한시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투명하지 않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발언에서 그 의도가 드러나 있음.

-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에서 시사를 받을 수 있음.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문제 개입은 사실상 실패하였는데, 그 까닭은 중국은 미국에 대하여 저항할 때 다른 나라의 상품을 거액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힘 대결을 벌이며, 거대한 경제력을 무기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음.
  - 강대국 중국과 약소국 북한의 경우는 미국을 다루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임.
  
- 미국의 인권문제 개입에 대하여 북한이 거세게 반박하고 있으나 북한의 반박은 북한내의 인권실태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큰 설득력이 없음.
  - 북한의 반박논리의 핵심은 수많은 빈곤과 유색인종 차별 등 심각한 인권유린국인 미국이 오히려 「인권재판관」, 「종교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자주권을 유린하고 있는데, 인권은 내정간섭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패권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임.

## VII. 정책적 고려사항

- 남북대화를 위하여 북미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본격 제기하는 것은 북미간의 대화에 장애가 되며 남북 대화에도 장애가 되는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권문제 개선은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제기는 필요하며,
  - 북한의 인권문제는 한국정부가 제기하기 어려운 것을 미국이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인권문제가 지나치게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지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은 미국을 ‘유일초대국’으로 규정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어 국제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바, 인권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
  - 유엔인권이사회에 제2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EU국가들과 인권대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북한이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인 것으로 점차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남북관계 현실상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접촉면의 확대가 간접적으로 인권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을 미국과 북한에 설득함.
- 미국 의회가 2000년 5월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해 필요한 PNTR(항구적 정상교역관계)을 허용한 것도 미-중간의 경제교류의 확대가 중국의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결과임.